

제주 문화유산정책의 회통적 관점에서의 방향*

-불교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고상현**

- I. 회통의 시대, 문화유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 II. 문화재와 문화유산에 담긴 의미
- III.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회통과 활용
- IV. 제주 불교문화유산 정책의 현황
- V. 제주 불교문화유산 정책의 방향
- VI. 맺으며

국문요약

분절과 단절의 시대를 거쳐 융합과 회통(會通, Conciliation)의 시대이다.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편의상 무형문화와 유형문화,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으로 나누어 이해해 왔다. 문화유산을 회통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의 문화유산정책의 현황을 불교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제적으로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의 확장과 점, 선, 면의 분별적 관점에서 점과 선과 면을 아우르는 공간적인 복합적 개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불교문화재의 경우 유형유산인 불상과 화불 등 대부분이 무형유

* 본고는 '제27차 제주문화관광포럼 정책토론회 제주 문화유산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 동국대학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산인 의례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제주 문화유산정책의 현황을 제주도에서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거나 발행한 도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온라인 정보로는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www.jejuro.go.kr)”과 “제주학아카이브(http://www.jst.re.kr)의 디렉토리를, 도서로는 2009년 개정된 『제주어사전』과 2012년에 편찬한 『제주민속사전』에서 불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내용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8년 제주문화상징 99선에서도 불교는 0.03%인 3개에 불과하였다. 이들이 제주의 불교문화를 누락시킨 것은 단순히 불교가 아니라 천여 년의 걸쳐 형성해 온 제주 민속과 문화를 말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에서 발행되고 서비스되는 각종 자료에서 천여 년의 역사와 풍속인 불교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해야 한다. 둘째, 제주라는 공간을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다. 제주 전역을 공간콘텐츠와 에코뮤지엄화하는 불교문화축전의 개최를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복신미륵의 랜드마크화, 넷째, 힐링산업으로서의 참선(參禪, Meditation practice)문화를 토대로 한 마음산업(mind industry)의 육성, 다섯째, 이를 위해 (가칭)세계마음센터를 포함한 불교문화콤플렉스의 건립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제주문화유산정책, 무형문화유산, 불교문화유산, 마음산업, 참선.

I. 들어가며

분절과 단절의 시대를 거쳐 융합과 회통(會通)의 시대임을 강조하는 요즘이다. 우리들의 삶은 융합적이고 회통적인데도 불구하고 사고는 분절이나 단절을 요구받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나누고 편 가르려는 데 익숙해져 있다. 즉 이원적, 혼돈적 세계관으로 살고 있다. 문화나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다. 문화유산을 이해할 때, 편의상 무형문화와 유형문화,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으로 나누어 이해한 것이 마치 이들은 전혀 별개인양 이해하고 바라보고 정책을 펼쳐 왔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활용과를 2005년 신설된 지 10여 년이 이르고 있는 지금에도 여전히 그렇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1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이는 고 려시대에 대륙으로 편입된 이후 조선시대의 출륙금지령을 거치면서 절 해고도, 유배지로 축소되고 왜소화된 대륙 부속도서로서의 제주가 아니라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이자 첫 출발점이며 해양시대를 열어가는 독립적 주체적인 탐라(耽羅)로서의 길을 여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¹⁾ 새로운 출발점에는 새로운 관점과 안목을 필요로 한다. 분 절적인 사고를 넘어 회통적인 관점으로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형의 결과물이 유형이며, 유형으 로 인해 무형이 지속되고, 하나의 점이나 면을 넘어 점과 면과 공간의 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융합시대에 이분법적이고 분절적인 사고를 넘어 회통적 관점으로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러한 관점에서 문화유산의 개념과 문화재에 대한 정책의 변화와 방향, 그리고 제주 문화유산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불교문화유산을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문화재와 문화유산에 담긴 의미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개념은 최근 수십 년간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변 화를 겪어왔다.²⁾ 어떤 경우에는 유사한 개념으로 어떤 경우에는 상하의 위계화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이 개념에 대한 논의 가 우리 사회에서 활발해진 까닭은 일정 정도는 유네스코가 제정한 국

-
- 1) 전경수는 지금껏 당연시 되었던 한·탐동조론에 문제제기를 하며 한·탐별조론을 제시하고 탐라라는 명칭의 주체성과 제주라는 명칭의 종속성과 타자성을 전개하고 있다. (『한·탐별조론과 탐라의 문화주권』,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3, 11-58쪽) 제주의 주체성이란 관점에 비추어보자면, 현재의 주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라는 점은 명칭만이 아니라 정책에서의 선도 성이나 주체성도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 2) 전경수, 「무형문화재 개념의 적합성과 문화유산론의 검토」, 『민속학연구』 제11호, 국립민속박물관, 2002.

제규약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의 일반적 정의를 보자. 문화재단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정한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민속 문화재, 천연기념물, 사적, 명승지 따위를 이르는 말”(국립국어원, 네이버)이나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되어 그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유형, 무형의 축적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다음)로 정의되고 있다. 1960년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에도 특정 집단의 문화적 산물, 나아가 문화유산과 창조활동의 소산을 모두 포괄하였으나, 1962년 법적 보호·보존 대상의 범주를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으로 특정하면서 문화유산보다 왜소한 개념으로 축소되었다.³⁾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정의에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축소된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화유산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 정신적·물질적 각종 문화재나 문화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국립국어원, 네이버)이나 “앞 세대의 사람들이 물려준, 후대에 계승되고 상속될 만한 가치를 지닌 문화적 전통”(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다음)으로 정의되고 있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는 문화유산을 자연적·문화적 환경, 주위 경관, 역사적인 장소, 유적지, 건축물과 같은 유형적 자원과 과거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문화적인 관습, 지식, 삶의 경험, 작품발표회와 같은 무형적인 자원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유네스코 국제규약에서는 문화유산은 기념물이나 유물을 수집해 놓은 것(collection)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구전 전통(oral traditions), 공연예술(performing arts), 사회적 관습(social practices), 의례(rituals), 축제 행사

3) 정수진, 「무형문화재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글로벌 시대의 문화 표상-」,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3집,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94-96쪽

(festival events),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그리고 전통 공예 기술 등 선조에게서 물려 받아 후손에게 물려줄 전통이나 살아있는 표현물(living expressions)이 포함된다.⁴⁾

문화유산이란 개념은 지난 2013년 6월 국회에 제출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명기되어 국가 법률에도 반영되는 듯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은 현행 ‘무형문화재’의 범위에 속하는 전통적 예능 또는 기능 외에 추가로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과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 부합되도록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무형문화유산의 범위설정은 보전 및 진흥의 대상이 되는 무형문화유산을 선정하게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중국이 무형문화유산법을 제정(‘11.2.25.)하여 소수민족(조선족 포함)의 구전문학, 전통미술, 기예·잡기, 전통의약, 명절민속 등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범주화⁵⁾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⁶⁾이라는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률에서는 무형문화재로 축소해 버렸다.

이상의 내용으로 본다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무형문화유산과 유형문화 및 자연유산 간의 깊은 상호 의존 관계”임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유형과 무형의 원형 혹은 전형의 유지를 넘어 창조적 계승과 발전은 물론 과거(앞 세대)와 현재, 미래(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문화재청·아태무형유산센터,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해설집』, 문화재청·아태무형유산센터, 2010, 13쪽

5) 중국은 총 3차에 걸쳐 아리랑, 농악무, 씨름, 판소리, 회갑연·회혼례 등 조선족 관련 16개 종목을 국가급 대표목록으로 선정·공표하였고, 이 중 농악무는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함.

6) 박명수,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 1-16쪽

Ⅲ.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회통과 활용

오늘날 우리나라 문화정책에서 유형문화재 중심의 정책과 사고로 인해 수많은 무형문화유산은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다. 또한 유형문화재와 관련한 무형문화유산도 분리해서 보는 관점으로 인해 멸실은 심화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법」)이 지난 2015년 3월 27일 통과되어 2016년 3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문화재 개념의 축소 등 문제점이 없진 않지만 문화정책에 일정 정도의 전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유형문화재의 원형유지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서의 괴리가 그 하나이고, 이 둘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또 다른 하나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정책의 패러다임이 회통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주도의 유산정책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제주 경실련에서 도의 문화재 정책을 비판하며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거기에는 “도지정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불상을 이용해 보호누각을 짓는다”이나 “공공시설물도 아닌 법당 건립 명목” 등에 대한 표현이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다.⁷⁾

불상이나 화불 등이 부득이한 과정을 거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면 별개의 문제겠지만, 사찰에 모셔진 경우에는 보호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불교문화유산들은 단순한 미술품으로서 조성되는 것이 아니다. 불모(佛母)에 의한 조성과 그것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불복장(佛腹藏) 의식을 거쳐야만 비로소 출재가자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의 예경의 대상이 된다.(<사진 1>에서 <사진 3> 참조) 우리나라의 국보와 보물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 관련 유물인 불상과 화불, 탑, 불교 공예품, 경전 등의 본래 조성 목적은 감상용 미술품이 아니라는 점은 상식일 것이다. 불교 유물은 거의 예외없이 의례용이나 수행용으로 절차에

7) <http://www.jcjungo.com/> 성명&보도자료 중 2014-04-29 등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다.



〈사진 1〉 불복장의식 장면1



〈사진 2〉 불복장의식 장면2



〈사진 3〉 복장 후 점안의식을 마친 불상

의해 시대에 따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품으로 조성되어 왔다.⁸⁾ 때로는 지역의 민중들과, 때로는 발원자나 조성자의 모습과 정서, 산물들을 반영하여 왔다.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를 띠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이들 문화재는 박물관에 박제화된 전시품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사진 4〉 제주 성광사 법당 49재 의례

이들 문화재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대중들이 의식을 하고 의례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봉안해야 한다. 그것은 유물의 크기에 비례해서 공간을 마련하기도 해야겠지만 오히려 의례 참가자들에 맞게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사진 4〉) 불상

의 크기에 따라 불전을 짓는 것은 일면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합리성이라는 미명하에 사라져간 우리의 문화를 다시 한 번 죽이는 꼴임을 각인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것을 빌미로 하여 무한정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8) 의례에는 자행의례와 타행의례, 일상의례와 수행의례 등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는 의례를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의례와 수행을 달리 인식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불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 의례는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예불을 매일 올리는 사찰에서는 그 의미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각기 전공대로 따로 따로 분리해서 보고 있다. 불상과 그것을 모시는 의례는 뿔려야 뿔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유형의 불상과 무형의 의례를 회통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음도 마찬가지다. 불교의례는 유네스코가 강조한 무형문화유산의 특징인 집단간의 전승을 통한 공동체성은 물론 전통성과 현대성의 공존, 배타성을 모두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불상은 의례용으로 조성되었다. 의례란 일반적인 예식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는 수행의례도 포함하고 있어서 불교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불교의 신앙과 수행은 크게 자력과 타력으로 나눈다. 일반적으로는 자력은 주로 선수행을 일컫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타력은 아미타신앙 등 각종 불보살들을 믿고 따라 신행하는 것으로 염불, 주력 등을 꼽는다. 하지만 이것들은 상호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국수행 전통에서는 타력의 자력신행화, 즉 자타불이(自他不二)로 회통되고 있다.

따라서 불상은 소형의 개인용 원불에서부터 다수의 예배용인 법당용은 물론 때로는 비바람을 맞으며 오가는 민중들의 삶의 고락을 함께하는 야외에 조성되기도 한다. 이처럼 불상이 있어야 할 곳은 수행을 포함한 각종 의례를 올리는 이들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야외용이나 원불용은 별개라 하더라도 법당에 모셔지는 불상은 당연히 법당을 이용하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조성될 당시에는 그 사찰의 사격이나 중심 사상에 따라 법당이나 찾아오는 불자들을 고려하여 크기나 형태가 정해졌을 것이다. 조성시기가 오래된 불상의 경우에는 불일치가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오늘날처럼 이동이 자유로워진 시대에는 고불(古佛)을 모시는 것도 법당의 규모가 어느 정도 맞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불은 법당 내 별도로 모시고 새로 조성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점을 반영한 사례가 제주도에서 2015년 3월 12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지정 동산(動産)문화재 지원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다. 제6기 민선 도정이 들어선 이후, 2014년 9월 24일 「지침」이 제정될 당시 한 칸 12자로 좌불 최대 5×3칸, 좌불 및 입불상은 최대 3×2칸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도지정 문화재 가운데 와불상은 없으며, 좌불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보자면 최대 3×2칸으로 이를 환산하면 23.5평이라는 물리적 공간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제주 경실련의 주장처럼 마치 합리적인 지정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불교계에서 부당함을 지적하여 개정을 요구한 끝에⁹⁾ 2015년 3월 12일 6개월 만에 내용을 삭제, 개정한 것이다. 당시 불교계의 주장도 공간의 협소함을 문제제기하는 한계가 있긴 하였다. 이는 불상을 하나의 유물, 개체덩어리로 보지 않고 문화재이자 의례의 대상으로 회통적인 관점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찰에 대해 누구나 쉽게 간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스님들과 사중의 사람들이 숙식하는 공간의 필요성이다. 사람들이 살지 않아 관리원을 두고 경비를 지불하는 궁궐이나 서원의 경우와는 달리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스님과 사중의 사람들이 거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문화재 관리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별다른 경비를 지불하지 않고 이들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의 국보와 보물, 지방문화재 등은 지원이 없어도 보존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있다.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불상의 보존과 의례로서의 공간과 보전을 위한 스님 및 재가자의 기거공간도 고려되어야 한다.

사찰문화재는 그 문화재 하나하나가 독립하여 예술적·역사적 가치를 가질 뿐 아니라, 당해 문화재가 소장하고 있는 사찰 전체와 그 수행환경, 주변의 자연적·문화적 환경 등이 일체가 되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즉 유형의 문화재와 종교시설 등의 물리적 자원과 의례, 종교행동 등 행동양식인 문화자원¹⁰⁾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비단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나 전통사찰에서만 아니라 일반사찰도 마찬가지다. 앞에 제시한 49재를 지내고 있는 성광사(<사진 5>)나 한국의 전통 수행법인 참선을 이어가고 있는 원명선원(<사진 4>)을 통해서

9) 제주불교연합회·제주불교신문, 「불교문화재 보호와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2014. 1.29.; 제주불교연합회, <성명서 제주도정의 반문화적인 新 역불정책 철회하라!>, 2015.2.16. 등

10) 고통우, 「여가문화프로그램으로서 템플스테이 사회적 가치평가」, 『템플스테이 가치 평가에 관한 정책 세미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3, 61쪽

도 엿볼 수 있다.

사찰의 불상·화불 등의 문화유산을 개별적 가치로 보는 점(點)의 관점은 유지하되 사적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찰이라는 면(面)으로,¹¹⁾ 더 나아가서는 사찰을 둘러싼 문화적·자연적 복합 공간(空間)으로 인식해야 한다. 2차원적 문화재적 관점에서 공간적 3차원을 넘어 시공간의 4차원적 복합적 관점의 문화유산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유형의 문화를 위한 제도나 박물관, 미술관 등을 건립할 때에는 서구 유럽 등 외국의 것을 모델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해 설립된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차원에서 최초로 건립한 무형문화유산의 전당이다. 이처럼 무형이나 복합의 문화유산적인 관점은 국가적으로도 이제 세계의 문화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민 헌장에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은 유서 깊은 탐라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자이며 천혜의 아름다운 땅 제주의 주인이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자산을 소중히 지켜 나가며 새로운 제주 시대를 창조하고, 세계화의 주역이 되겠다는 사명의식”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인 만큼 국내의 다른 시도와는 달리 무형과 유형 문화유산의 상호 관계를 인식하는 보전과 이를 관광 등에 활용하는 회통적이고 융합적인 정책을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세워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도정에서는 부처주의(부처별 이기주의)나 업무별 권한 영역을

11) 면단위 문화재 보호는 1999년 6월 30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2에 신설된 문화재 개념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물론 그 이전인 1980년대 후반 몽촌토성, 황룡사지, 경주월성, 청주 흥덕사지 등을 면단위, 지역단위, 벨트단위로 보수정비가 되었다.(정석, 「역사문화환경의 면적(面的)보전제도 도입방안」,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0권 제4호, 한국도시설계학회, 2009; <불교신문>, ‘점에서 면으로 확대된 문화재 보수정비’, 2007-03-03,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79175> (검색일 2015-07-19)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2조에서 면단위문화재단 “궁궐·사찰·왕릉·민속마을 등과 같이 일정 공간 안에 다수의 문화재가 형성되어 있는 문화재”를 말하며, 점단위문화재단 “당간지주·비석 등과 같이 단일 또는 일부 시설물이 소규모로 설치되는 문화재”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지침의 규정으로도 사용되나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구분하는 것에서 벗어나 협력의 정책이 요구된다.

IV. 제주 불교문화유산 정책의 현황

제주 불교 문화유산정책의 현황은 제주도 등 공공기관에서 서비스하거나 발행한 자료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제적으로 제주도의 불교사와 종교인구의 분포를 보겠다. 제주에 불교가 전래된 연원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연원에 대해서는 고대 인도에서 직접 해로로 유입되었다는 남방전래설과 대륙을 통한 북방전래설(삼국전래설, 고려전래설)이 있다. 남방전래설은 홍유손(1431~1529, 입도 1498~1506)의 『소총유고(篠叢遺稿)』 중 「존자암개구유인문」(1507)에 “존자암은 삼성이 처음 일어났을 때 만들어져서 삼읍이 정립된 후까지 오래도록 전해졌다.”고 한 것이나, 『대아라한난제밀다라소설법주기』(약칭, 『법주기』)에 부처님 열반 후 800년 뒤인 344년 사자국(현 스리랑카)의 대아라한 난제밀다라의 제자 16 대아라한 중 여섯 번째인 발타라존자가 탐몰라주 곧 탐라에 살았다고 한 것 등에 근거하고 있다. 북방전래설은 탐라가 백제 문주왕 2년(476)에 처음으로 백제에 방물을 바친 기록이나 이후 고구려와 또 662년 신라와 관계를 맺는다. 당시 삼국은 불교문화가 성행하던 시기였으므로 불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고고학적 유물로 보면 제주 법화사는 통일신라 장보고(?~846)에 의한 창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태조(재위 918~943) 이후 945년(혜종 1) 이후 국가의례마다 상례적으로 참석하였으며, 1034년(정종 1)에 팔관회에 참석하기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불교가 제주로 유입된 경로로 남방전래설과 북방전래설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진행형이다. 그럼에도 존자암지 설화나 법화사지 등과 관련하여 고려(918~1392) 초를 정착기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¹²⁾ 이것으로 어렵잡아 보아도 불교가 1,0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12) 오성, 「제2절 불교」, 『제주도지』 제6권 문화·예술, 제주도지편찬위원회·제주도, 2006,

있다.

종교인구 분포를 보면, 조선시대에는 절오백 당오백이란 말이 전할 정도로 절대 다수의 도민들이 불교를 신봉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이형상에 의해 벽불정책이 시행되었고 현대사에서 4·3사건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은 현대에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통계청 인구센서스이다. 가장 근년인 2005년 통계청 인구센서스 자료를 보면, 제주 전체인구 중 종교인구는 272,590명(51.3%)이고, 불교도는 173,658명(32.7%)으로 나타났다. 1995년 통계도 이와 유사하다. 10명당 3.3명이 불교도라는 의미이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최근 도와 제주의 공공기관에서 진행한 문화유산정책의 사례를 들어보겠다. 먼저 정보통신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내용을 보자. 제주도가 주관하여 2006년부터 2008년 2월 1일까지 2년에 걸쳐 제주의 의식주, 신화전설, 민담, 민구, 방언 등 18개 분야와 각종 고서, 화첩, 영상, 논문 등 다양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www.jejuro.go.kr)”을 보자. 디렉토리에 불교는 18개 상위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하위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민간신앙’에서 ‘개관-가신신앙-당굿-유교식 마을제’라는 분류에 조차 누락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민간신앙의 아래 탑재된 것을 5번부터 약천사, 관음사 등에 대해 언급되어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간신앙 하위에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두지 않고 있다. ‘세시풍속’도 마찬가지이며, 하위 카테고리에 초과일이 나와 있을 뿐이다. 장례에도 승탑만이 나와 있으며, 49재 등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다. 2014년 3월 17일에 오픈한 “제주학아카이브(http://www.jst.re.kr)”도 마찬가지다. 디렉토리에 종교 항목에는 무속과 기타로만 분류되어 있다. 제주의 종교는 무속이 중심임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불교항목으로 검색(검색일 2015.8.2.)하면 “제주 불교문화재 자료집” 1건만 검색되고 있다. 다른 키워드 ‘법정사’, ‘불탑사’ 등으로 검색하면 자료가 있으나 이들을 불교로 분류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야 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다음은 제주도에서 발행한 도서들을 보겠다.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2012년에 편찬한 『제주민속사전』을 보자. 민속사전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민속이란 “인간의 생활인 동시에 그 생활이 계속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승되는 인간 공통의 습속”(발행사 중)으로 “통과의례·민간신앙·세시풍속·생산기술·의식주 등 제주민속 전반을 대상으로 삼아 보편적인 항목을 고루 선정하여 수록하였다”고 하고 있다.¹³⁾

제주 관련 고기록 중 연등의 풍속에 대한 기록을 보자. 최부는 성종 18년(1487)에 제주에 머물다가 부친상으로 귀환하던 중 표류한 기록인 『표해록』 중 「탐라시 삼십오절」에서 “세월은 헛되이 버려지기 싫어, 줄 다리기와 그네뛰기는 예부터 전해오고, 절에는 향화가 끊이지 않고 피어 오르고, 연등 저녁이면 통소와 북 소리도 패를 지어 가득하네”라고 기록하고 있다. 청음 김상헌이 선조 35년(1601)에 지은 『남사록(南槎錄)』에는 “풍속에 2월을 연등절이라 한다”고 적고 있다.¹⁴⁾ 제주에서 벽불(闍佛) 등 벽이단 사상을 펼친 이형상(1653~1733, 입도기 1702~1703) 목사의 『남환박물』에는 “사찰을 역시 모두 없앴다. 제주 성 동쪽에 만수사가 있고, 서쪽에 해륜사가 있다. 각각 불상은 있지만 상시 관리자는 없어서 마을에서 한 사람을 정하여 돌보고 있다. 또 네 명절(설·단오·추석·동지)에 서로 모여서 예불할 뿐이다.”¹⁵⁾ 이것으로 보아 이미 오랜 전통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윤식은 1898년 제주도로 유배되어 쓴 『속음청사』에도 사월 초파일에 등을 달았다는 기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근현대에도 이러한 전통은 유지되고 있다.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민속은 ‘초파일 얘기머리짜기’(307쪽)만 언급되어 있다. 불교와 연관성이 있는 영등굿(238쪽)과 요왕굿(246쪽), 칠성(310쪽) 등에는 불교와의 관련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럼에도 민담으로 전한다는 승려를 비

13) 『제주민속사전』,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2.

14) 이형상 지음, 오창명·이상규 옮김, 『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115쪽.

15) 이형상 지음, 오창명·이상규 옮김, 앞의 책, 113쪽.

16) 제주도 연등회에 대해서는 한금순의 「제주도 영등굿의 유래-연등회에서 영등굿으로의 변천-」(『정토학연구』 제11집, 서울: 한국정토학회, 2008)을 참고하기 바란다.

하하는 중타령은 포함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개남 혹은 괴남신앙(관음 신앙), 맹진국 할머니 등극날, 우란분재, 동지 등 다양한 불교민속에 대해서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제주어사전』을 보자. 이 사전은 현평효의 『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 1962)를 근간으로 삼아, 1995년에 표제어 18,456 항목의 『제주어사전』으로, 다시 표제어 25,350 항목으로 2009년에 개정·증보되었다. 1995년 추가시 조사 분야를 보면, 천문, 시후, 방위, 인륜, 인사(이상 조사·집필위원 현평효, 오창명), 산악, 식물(이상 조사·집필위원 김종철), 의류, 해녀, 민요, 신체, 질병, 행동, 동물, 무속, 관용 표현(이상 조사·집필위원 강영봉), 어업, 세시풍속, 공예, 도구, 수렵(이상 조사·집필위원 고광민) 등 21개 분야 5명의 집필진으로 구성되었다. 2009년의 개정·증보에는 속담 관련, 생산기술 관련, 무가 관련, 마을이름, 일반 어휘, 사진 등 고재환, 강영봉, 고광민, 문순덕, 강정식, 오창명, 김순자 등 7명의 분야별 조사·집필위원으로 구성되었다.¹⁷⁾ 여기에서 불교 항목은 애초에 조사·집필대상에서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한 제주문화상징물 99선을 보자. 제주도에서 발행한 『제주문화상징』(제주문화예술재단 발행)에서 제주문화의 원형을 발굴하고자 자연, 역사, 사회 및 생활, 신앙·언어·예술 등 4 분야로 범주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문화상징물 99선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4> 제주문화상징물 99선

선정분야	제주문화상징물 99선 대상
자연분야	한라산, 오름, 용암동굴, 돌담, 꽃자왈, 제주마, 제주한란, 마라도, 바람, 성산일출봉, 왕벚나무, 내창, 용두암, 용천수와 봉천수, 아흔아홉골, 영주십경, 사랍발자국화석, 검은도새기, 문주란, 검은쇠[黑牛], 노루, 산방산, 폭낭(맹나무)
사회 및 생활분야	해녀, 원(垣), 테우, 갈옷, 허벅, 정낭(정주목), 제주초가, 테우리, 굴, 말총공예, 빙떡, 자리회, 소금빌레, 수놓음, 돛동시, 정동벌립, 오메기술·고소리술, 물방애, 애기구덕, 모듬벌초, 무덤과 산담, 켄당과 삼춘, 묵국, 개말(浦口), 남방애, 고팡분리, 번쇄와 땀쇄, 해안일주도로
역사분야	삼성혈, 제주고산리신석기유적, 제주목관아, 관덕정, 향파두리항몽유적지, 환해장성, 원당 사지오층석탑, 제주4·3사건, 유배의 땅, 하멜의 표도, 김만덕, 봉수와 연대, 오현단, 제주

17)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09, 5-8쪽.

	도식고인돌, 호적중초, 제주삼양동선사유적, 잣성, 진지동굴, 출륙금지, 법화사지, 고득중, 읍성과 진성, 탐라
신앙·언어·예술분야	신구간, 제주국, 방사탑, 제주칠머리당영등굿, 걸궁, 탐라순력도, 내왕당무신도, 추사와 세한도, 제주민요, 설문대할망, 들하르방, 동자석, 동·서자복, 당, 포제, 심방, 입춘굿, 영감놀이, 자청비, 본풀이, 한라산신, 삼승할망, 닛들임, 이어도, 제주어
제주10대 문화상징	한라산, 해녀, 제주어, 제주4·3사건, 돌문화, 제주국, 제주초가, 갈옷, 굴, 오름

이 가운데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역사분야에 2가지로 원당사지 오층석탑과 법화사지가, 신앙·언어·예술분야에는 동·서자복이 유일하다. 불교에서 파생된 것으로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등을 들 수 있으나 이것은 불교적인 내용이 습합되어 있으나 오묘한 불교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물론 제주의 수많은 문화와 민속 가운데 불교의 것을 다수 포함시킬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불교와 관련된 것은 고작 3개에 불과하다. 전체의 0.03%이다. 1,000여 년의 역사와 절오백 당 오백의 역사를 거쳐 오늘날에도 1/3의 제주도민이 향유하는 문화의 가치가 0.03%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더구나 신앙분야에서도 유형유산인 동·서자복만을 포함시킨 점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제주 문화재의 현황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총 378건 중 불교는 31건으로 12%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문화재(보물 포함)의 경우에는 41%(보물만은 16%), 문화재자료(등록문화재 포함)는 28.1%에 달하고 있다.¹⁸⁾ 이에 비추어보아도 문제가 없지 않다.

〈표 3〉 문화재 총괄현황(2015.3.31. 현재)

구 분	계	유형문화재 (보물)	기념물 (사적·천연기념물·명승)	무 형 문화재	민 속 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계	378	39	191	25	91	32
국가지정	106	6	64	5	9	22
도지정	273(121)	33(31)	128(51)	20	82(10)	10(9)
불교문화재	31(12.2%)	16(41)	3(1.5)	1(0.4)	2(2.2)	9(28.1)

18) 문화재 총괄은 도의회에서 제공(2015.8.2.)한 것이며, 불교문화재는 필자가 정리하였다.

유럽의 문화를 소개할 때는 당당하게 종교문화를 그들의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소개하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할 때는 유독 불교를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 조선시대 목사로 부임하여 제주문화를 음사나 하열한 것으로 보았던 육지인들의 대륙적 관점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이자 제주민의 기층문화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까 싶다. 이형상이 당과 절을 태웠던 것처럼 21세기 벽이 단이 진행되는 듯하다.

이상에서 제주의 문화유산정책들 가운데 인터넷 정보와 발간도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았다. 제주도와 제주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제주 문화와 민속, 역사 관련 연구서나 보고서, 책자 등 출판물들에서 불교와 관련된 내용의 누락이 많다는 사실은 문화유산정책에서 중대한 영역을 간과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유·무형문화유산의 융합을 위해 기본 전제가 되는 제주도의 현대사료라 할 수 있는 자료들이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호도된 제주의 문화유산 정보가 전달될 수밖에 없다. 이는 동시대인들에게도 그렇지만, 더더욱 후대에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과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의 문화유산정책의 오류에는 제주도민들의 의식도 일조하였음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 경실련에서 불교문화재의 집행에 대해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하듯이, 제주도정의 문화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그들의 문화가 누락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으면서 일부의 잘못만 들먹여서 그나마의 문화유산보호 정책마저 축소 왜곡되게 한다면 제주도민은 물론이고 외지와 후대에는 어떻게 제주문화가 올바르게 전승될 수 있겠는가. 제주 불교계는 외형적인 순례길 조성 등에도 힘을 기울여야겠지만, 공공사업에서의 종교간 형평성이라는 미명하에 천여 년의 역사와 민속을 송두리째 삭제하는 문화유산정책의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V. 제주 불교문화유산 정책의 방향

제주도의 문화유산정책은 제주문화의 전통성과 고유성, 보편성을 반영하고 유지하며 더 나아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¹⁹⁾ 문화유산을 단지 죽어있는 사물처럼 보호하는 것은 건물을 여러 시대의 조각조각들의 조합체로 보아 단지 호기심의 대상으로 만드는 파사디즘(facadism) 방식일 뿐이다.²⁰⁾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야 함은 앞서 언급하였다. 4장에서 지적한 내용 가운데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펴낸 『제주 문화융성 정책에 대한 인식과 발전과제』(2014)를 보자. 제주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여건 구축에 대한 인식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잘 구비된 여건으로는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문화유산, 신화 등)”이 34.1%, “전통문화의 보존(제주어, 굿 등)”이 22%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것은 “문화관광에 대한 제주도민의 적극적 관심”(4.5%)과 “문화관광 발전에 종사하는 사업체에 대한 지원과 혜택(4.5%)이었다. 반면에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잘 구비 안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문화와 관광을 접목시키는 정책과 지원 부족”이 31.1%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문화관광 시설이나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부족”이 21.6%, “문화관광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식 부족”이 18.9%로 그 뒤를 이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에서 발행한 공공자료들에 누락된 내용이 적지 않음에도 제주는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과 전통문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와 관광을 접목시키는 정책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위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잘 구비된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인 문화유산과 신화 등을 살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하루 빨리 찾아보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9) 문순덕, 『제주도 문화자원 분포 현황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10.

20) 황권순,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요인과 대안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5.

제주 문화융성추진단의 제주문화융성 정책 우선 추진사항을 보면 “문화시설과 인프라 확충”이 33.4%, “제주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전”이 24.1%로 나타났다.²¹⁾ 제주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 정책 추진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36%)와 “제주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 확대”(22%)를 들었다.²²⁾ 또한 향후 제주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문화산업 정책 관련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28%),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자원 발굴과 연구 강화”(20%)를 꼽고 있다.²³⁾

이처럼 문화융성이나 문화관광 발전,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통적으로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와 전문적인 연구의 확대와 강화를 통한 올바른 역할과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주도는 하루빨리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4년 2월에 신설된 문화융성추진단이나 문화예술협치위원회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 반년만에 폐지되는 조직이나 도의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지 않고 사적인 관계에 중점을 둔 문화예술조직은 지양되어야 한다.²⁴⁾

또한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과 “제주학아카이브”에는 상위 디렉토리에 소략하거나 빠져있는 천여 년의 역사적 전통인 불교를 별도로 추가하거나, 각 항목에 관련 내용을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하고, 사찰이나 불교적인 민속 등도 불교라는 키워드에 함께 검색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기능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도서에도 역사성과 전통성을 지닌 불교적인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하며, 만일 이전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것이 풍부한 문

21) 문순덕, 『제주 문화융성 정책에 대한 인식과 발전과제』, 제주발전연구원, 2014), 34-35쪽.

22) 문순덕, 위의 책(2014), 71쪽.

23) 문순덕, 위의 책(2014), 79쪽.

24) 진선희, “[2014 제주문화계 이슈&화제] (4)문화융성위 반년만에 폐지”, <한라일보>, 2014-12-29(검색일 2015.7.17.)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19778800485535036>

화관광 자원과 발굴, 연구 강화라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제주의 문화 융성과 문화산업의 발전에 힘을 실어가는 지름길이라 여겨진다. 불교적 내용의 축소나 누락은 불교를 잃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전통문화유산인 민속문화를 잃게 하고 제주의 원형성(Originality)과 정체성(Identity)을 없애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중국에는 정체성과 원형성이 일부만이 있는 특화될 것 없는 관광지로 전락하여 외래 관광객들이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 문화유산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유산 관리와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의 재편이 필요하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후에도 국가지정문화재를 제외한 지방문화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서 보존하고 있다. 지방문화재의 보존이 실제로는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지고 있지만 문화재관리 업무에 대한 중요성과 업무의 독자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문화재보존에는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관리 담당자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이었으나 최근 학예연구직이나 별정직 혹은 계약직 공무원을 두는 경우가 늘고 있다.²⁵⁾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문화재과를 설치하여 문화재에 대한 행정적 격을 높였으나, 2008년 3월 5일 문화재과와 문화예술과를 통합하면서 문화재계로 축소하였다.²⁶⁾ 이리다 보니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보다는 행정적인 편의나 일부의 의견을 심도있는 검토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방문화재 보조금지원 비율에 자부담을 50% 부과하는 5:5라는 지침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국비와 도비, 시비를 통해 전액 보조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 경우 시비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

25) 임경희, 「지방문화재의 보존과 원형 왜곡 -경상감영(慶尙監營)과 대구부(大邱府) 관아의 사례」, 『담론 201』 제14권 2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01, 72-73쪽; 류호철, 「문화재 관리체계의 한계와 개선방안 -유형문화재 현장 관리 조직 설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제54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3, 195-196쪽

26) 행정조직은 필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문화재와 관련한 조직은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이전에 있었던 문화재 관련 과를 복원하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과 충남의 경우 도비와 시비가 50:50으로 하고 자부담은 없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만 도비와 자부담을 50:50으로 하여 지방문화재 보존을 어렵게 하고 있다. 타 시도의 지방문화재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4〉 전국 시도의 지방문화재 보조금지원 현황. 2015년 현재

자치단체명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부산광역시			100%		100%
대전광역시			100%		100%
충청남도		50%	50%		100%
경상북도		50%	50%		100%
경상남도	50%	17.5%	32.5%		100%
제주도		50%		50%	100%

지방문화재는 국가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 중에서 지방정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중요성이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1990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적 자산이자 문화관광상품으로 가치가 부각되면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런 가치와 의의를 지닌 지방문화재를 소유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곧 지방문화재의 관리를 방치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정책에 대해 제주불교연합회에서는 성명서를, 제주불교신행단체장협의회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²⁷⁾

또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센티브 제도를 제고해야 한다. 최근 2년간 문화예술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인센티브를 보면,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에 3명씩으로 전체의 7%에도 미치지 못하며, 성과우수 대상자는 없었으며, 포상(도지사 표창)도 2%에 그치고 있다.²⁸⁾ 상대적으로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이 인센티브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 문화재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강화되

27) 제주불교신행단체장협의회 보도자료, 2015.7.19

28) 제주도 총무과에서 도의회에 2015년 7월에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것임.

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다른 측면에서 문화유산을 활용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화유산은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하는 창작기반이자 보고이다. 그러므로 문화유산의 활용(application)이란 문화유산의 재발견인 동시에 새로운 문화 가치의 창조과정이며,²⁹⁾ 그런 의미에서 관광화, 교육화, 문화콘텐츠(산업)화, 상품화 등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 문화유산의 원형이나 전형을 살리려는 재현적 상상력에서 문화유산의 무한가치를 발굴해 내기 위한 통합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³⁰⁾ 통합적 상상력은 제주 전 지역을 회동적인 방법으로 콘텐츠화하는 기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적합한 개념이 공간 스토리텔링(spatial storytelling)이다.

공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박물관/전시회, 축전(축제), 테마파크 등을 일컫는다. 제주는 섬이라는 독특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전체를 공간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불교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축전을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 전 지역을 공간으로 하여 불교문화축전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것이다. 불교문화축전은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찾는 시즌을 이용하여 각 사찰에서 다양하게 펼칠 수 있다. 선행사례로는 서울시가 2014년 10월 10일~12일 “서울시 전통사찰 Week”를 개최하여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체험하도록 한 바가 있다.

제주불교문화축전은 제주의 관문인 제주공항에서부터 시작한다. ①시작은 제주전통민속인 본향당 소지와 연계하는 것이다. 본향당에 나부끼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하얀 한지를 소지(素紙)라고 한다. 본향당에서 소원을 빌 때 이 소지를 가슴에 대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빌고

29) 활용은 보존을 전제로 한 활용, 보존과 활용의 조화, 적극적 활용, 창조적 파괴를 위한 퓨전 활용 등의 단계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복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심승구 외,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연구용역』,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전략연구소, 2006, 18-30쪽.

30) 심승구, 「한국 민속의 활용론과 문화콘텐츠 전략」, 『인문콘텐츠』 제21호, 인문콘텐츠학회, 2011.

서 나뭇가지에 걸어두면 모든 사연이 소지에 찍혀 할망이 다 읽어본다고 한다. 제주에 도착한 관광객들에게 소지의 변형인 서원지(誓願紙)를 나눠준 뒤 가슴에 품고 있다가 불단에 올리거나 신당에 걸게 하는 것이다. 마치 하와이에 도착하면 꽃목걸이를 걸어주어 남국에 온 기분을 살려주고³¹⁾ 티벳에 도착하면 길상과 공경의 의미를 담은 하얀 천인 까다(khata)을 걸어주듯이 말이다. 이는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축원(祝願)을, 그것을 받는 이는 발원과 서원을 하게 한다. 이를 시작으로 ②도지정문화재 불상 15점을 매년 선정하여 공항에서부터 가까운 사찰이나 특정한 곳으로 이운(移運)을 하는 행사, 즉 거리 행렬(parade)을 하는 것이다. 이는 도지정문화재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공개하여 도민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③이어서 제주 전 지역의 사찰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④불탑사에서의 답들이, 관음사·약천사·광명사 등 템플스테이 체험, 올레길 걷기와 병행하여 새로 개발되고 있는 불교성지순례길 걷기나 고관사에서 2010년 시작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사찰과 지역을 잇는 도보 순례인 꼬라(티벳어로 순례길), 단기출가, 남국선원에서의 참선수행, 원명선원의 금강참선단식 수행 체험, 선운정사의 빛마루축제, 무형문화재 제주 불교의식 참관 및 체험 등 다양한 불교 전통문화를 활용할 수 있다.

이운 행사와 성지순례길은 선(線, lane)이다. 선은 곧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는 망(網, network)을 만드는 기본이 된다. 망은 공간을 이루고 환류(還流)시스템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시스템은 곧 지역성을 띠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경제를 돕게 될 것이다. 참가자들의 재방문을 이끌기 위해서는 오감을 넘어 육근의 만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간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점적이나 면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지역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화, 특히 전통문화, 불교문화는 여전히 지역성의 핵심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이다. 문화의 세기라는 말은 많지만 문화는 여전히 소외되어 있고 기껏해야 국비나 도비의 지원으로 거대한 문화시설 하나를 만드는

31)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7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 창비, 2012, 41-42쪽.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축전과 같은 소프트 콘텐츠의 위력을 공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막연한 느낌으로 콘텐츠, 스토리텔링 등을 운운하며 문화산업을 들먹이기에 앞서 제주문화의 정신적 가치를 오롯이 가슴에 새기는 작업은 모든 일에 앞서서 치러야 할 선결작업이다.”³²⁾ 제주의 정체성(Identity)을 한결같이 말할 하지만 정체성은 절대로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야만 제주민의 자부심도 쌓인다. 개개인의 자부심이 모이고 모여서 제주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적 정체성의 창출도 중요하겠지만 불교문화축전을 통해 오랜 역사적 전통성과 현대성을 지닌 공동체성을 갖춘 정체성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무엇보다 급선무가 아닐까 한다. 더 나아가 아직도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묻혀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해야 한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대표적인 것으로 조선말기의 『속음청사』에도 나타나 있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민속행사인 연등회(초파일)와 현재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5호라는 한 종목으로 되어 있는 제주불교의식이 그것이다. 후자는 세분화되어야 한다. 범패는 불교의례에 쓰이는 통용어로, 수록재, 영산재, 상주권공재, 시왕각배재, 생전예수재 등 유사하면서도 각각의 특징을 지닌 다수의 의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까닭으로 1973년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었다가 1987년 영산재로 세분화된 의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2013년과 2014년에는 수록재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25~127호로 삼화사수록재, 진관사수록재, 아랫녘수록재(백운사) 등 세 곳에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제주불교의례도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서 한 종목으로 지정되어 불교의례의 다양성이 사라지거나 다른 것은 가치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비단 불교의례만이 아니라 제주불교의 전반적인 문화에 대해 제주 도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밀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제주 유일의 보물 석탑이 있는 원당사지를 비롯하여 수정사지, 월계사지 등 역사적 전거가 있는 사역들의 사적 지정, 제주 근현대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있는 고관사나 원명선원 등의 향토문화적

32) 문순덕, 앞의 책(2009), 4쪽.

가치를 지닌 사찰의 향토문화유적 지정 등이 적극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산에 대한 인식으로 국가적, 개개인의 대중적 관심이 유산을 보존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며,³³⁾ 지역문화를 보존 전승하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대중적 관심을 넘어 지역민의 자주적 참여이다. 또한 이에 못지 않은 것이 민관거버넌스의 유지이다. 예를 들면, 매년 12월 10일에 도지사의 주재하에 열리는 혈단(穴壇)에서의 건시제(乾始祭)와 한라산신제 등이 민간에서 주도해 오다 도지사가 초헌관이 되어 민관합동제관으로 바뀌었다. 제주의 발전과 번영, 도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는 전통제례의 제관을 도지사가 맡았으나, 최근 도지사가 종교적인 이유로 민간에서 민관의 합동제관으로 승격되어 거버넌스를 형성해 가던 전통이 깨어지지 않아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는 지역민 개개인과 관이 함께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협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은 복신미륵(福神彌勒)의 랜드마크(Land mark)화이다.³⁴⁾ 현대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초가의 낮은 지붕들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었을 시절에는 바다에서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복신미륵이었다고 한다.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조천(朝天)으로 먼 뱃길을 따라 오다 멀리서 미륵을 보며 무사히 당도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앞날도 자복이 넘치기를 기원했다고 한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하자면 이곳의 랜드마크였던 셈이다. 지금은 고층건물과 높은 담장으로 인해 가까이 가서야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제주의 랜드마크로서 복신미륵을 오늘날에 맞게 제주문화관광타워로서 내부에는 제주문화안내, 문화관광상품 쇼핑타워 등으로 새로운 형태로 세웠으면 한다. 비행기에서도 눈에 띄게 만들어 오르내리는 이들이 마음의 안녕을 기원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제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자산과 복을 누리고 그것을 널리

33) 김기룡·신동욱, 「고고유산 보존을 위한 체험교육의 활용 방안 : 선사시대 유적축제를 중심으로」, 『박물관교육연구』 12, 한국박물관교육학회, 2014.

34) 이 제안은 고관사 주지 제량 스님과의 인터뷰(2015.6.14. 제주 고관사)를 바탕으로 하였다.

배울 수 있도록 전통적인 스토리에 현대적으로 스토리메이킹(storymaking) 한다면 하르방과 함께 또 다른 문화관광 상품으로 자리할 것이다. 버려지고 잊혀진 복신미륵의 복원은 제주의 자산과 복을 증진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다.

다음은 힐링산업과의 연계성이다. 2000년대 중반을 휩쓴 웰빙(Well-being) 트렌드가 힐링(Healing) 트렌드로 급속하게 대체되었다. 웰빙 트렌드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적 기반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 힐링이란 극심한 취업난과 생존 경쟁에 내몰린 20~40대는 물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층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나 위상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힐링 트렌드는 이제 힐링산업으로



〈사진 5〉 복신미륵 동자복

진화하고 있다.³⁵⁾ 힐링산업 가운데 가장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마음산업(mind industry)이다.³⁶⁾ 미국의 경우 마음산업의 규모는 60억 달러(한화 8조원)에 이르며 매년 10%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칼라바사스의 명상센터 ‘더 아쉬람’은 1주일 참가비가 3,500달러(한화 370만원)나 되지만 6개월까지 예약이 완료되어 있을 정도라고 한다.³⁷⁾

마음산업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천여 년 이상의 역사속에 이어져 온 4대 수행법인 참선, 염불, 간경, 주력 가운데 참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선(禪)의 정수와 산업화를 선도하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국가들이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도 이런 흐름에 따라 『제

35) 힐링산업에 대해서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신동일의 『제주지역 힐링관광 발전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13)가 발행되어 제주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36) 정진홍은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21세기 북스, 2007)에서 마음산업을 제5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기도 하다.(175쪽)

37) “‘마음산업’ 宗家は 불교… 역수입, 바라만 볼 것인가 -불교 마음산업 어디까지 왔나”, <현대불교신문>, 2013-01-01(검색일 2015.7.16.)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195>

주지역 힐링관광 발전방안 연구』에서 다양한 대안을 내놓았다. 여기서는 제주의 자연자원형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나 인도 등의 세계적인 명상센터에 비해 제주는 기후 등 자연환경적으로 뛰어난 자연 생태환경을 갖추고 있어 이들보다 더 발전된 수행센터와 선진국형 마음 산업으로 향상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제주에는 출가 스님들의 전문 수행처인 남국선원이 정신적 요람으로 자리를 하고 있으며,³⁸⁾ 원명선원은 1976년부터 현대 선승인 서암 스님, 서용 스님 등이 주석하며 참선을 지도하였으며 대효 스님이 지난 30여 년간 학생, 청소년, 일반, 교사 등 다양한 대상별로 금강단식참선수련회를 진행해 오고 있다.³⁹⁾ 3년 전부터 제주도에서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명선원에서 진행 중인 “고통끝 행복시작菩提치유캠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관음사 등의 템플스테이에서의 수행이 초심자용이라면, 이곳은 일반인을 위한 전문적인 수행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주의 특화된 참선명상문화를 통해 힐링산업, 마음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참가자가 편안하게 수련할 수 있는 인프라, 즉 세계마음센터(가칭)를 조성하여 마음센터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선원의 자율성은 인정하되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토대로 둘째, 지속적으로 다양한 연령층에 적용될 수 있는 세분화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셋째, 지도자 양성을 위한 장기적 프로그램 개발, 넷째, 제주도 차원의 정책 입안 및 관련 법규의 제정을 통한 연구와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국이나 미국을 필두로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된 참선명상문화가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영향이나 뇌과학 연구 등의 중심 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가 전세계의 정신문화를 선도하여 세계일화(世界一花)로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상징성을 강화하고, 세계자연문화유산을 다른 산업으로 인해 파괴하지 않는 최선의 보존책이자 선진형 문화산업으로 한단

38) 1994년 개원하여 스님들의 전문수행처인 무문관과 제방선원이 있으며, 2004년 하안거에 재가자 60여 명을 시작으로 시민선원이 개설되어 있다.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21 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사찰문화연구원, 2006, 225-231쪽.

39) 사찰문화연구원, 위의 책(2006), 137-140쪽.

계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세계자연문화유산인 평화의 섬 제주에 카지노나 투기 등 도박이나 외국인에게 자산을 매매하는 산업을 통해 경제를 일으키려는 발상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VI. 맺으며

본고에서는 먼저 제주문화유산정책의 현황 가운데 역사성과 전통성을 지닌 제주불교문화유산의 활용 현황을 제주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상의 디지털 정보와 발간도서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불교문화유산은 조사 연구 항목에서 빠져있거나 소략화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제주의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창의적 시각으로서의 회통적 관점, 보존과 활용의 조화, 공간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한 불교문화축전, 세계마음센터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컴플렉스의 구상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선후기부터 규정되기 시작한 절해고도가 아니라 그 이전 시대처럼 바다를 누비고 대륙과 활발하게 교류했던 대륙과 해양의 문화 이니셔티브(Initiative)로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문순덕, 『제주문화상징물 99선 활용 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09.
- _____, 『제주도 문화자원 분포 현황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10.
- _____, 『제주 문화융성 정책에 대한 인식과 발전과제』, 제주발전연구원, 2014.
-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21 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사찰문화연구원, 2006
- 심승구, 「한국 민속의 활용론과 문화콘텐츠 전략」, 『인문콘텐츠』 제21호, 인문콘텐츠학회, 2011.
- 오 성, 「제2절 불교」, 『제주도지』 제6권 문화·예술, 제주도지편찬위원회·제주도, 2006.
-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7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 창비, 2012.
- 이형상 지음, 오창명·이상규 옮김, 『남환박물관』, 푸른역사, 2009.
- 임경희, 「지방문화재의 보존과 원형 왜곡- 경상감영(慶尙監營)과 대구부(大邱府) 관아의 사례」, 『담론 201』 제14권 2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01.
- 전경수, 「무형문화재 개념의 적합성과 문화유산론의 검토」, 『민속학연구』 제11호, 국립민속박물관, 2002.
- _____, 「한·탐별조론과 탐라의 문화주권」,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민속사전』,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2.
- _____,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09.
- 한금순, 「제주도 영등곳의 유래-연등회에서 영등곳으로의 변천-」, 『정토학연구』 제11집, 서울: 한국정토학회, 2008.

Abstract

Plan of the Conciliation Standpoint of Jeju's cultural heritage policy - focused on the Buddhist cultural heritage

Ko, Sang-hyun*

After periods of segmentation and disconnection, times have changed to bring a period of conciliation. For convenience, issues and items pertaining to cultural heritage can be categorized into tangible cultural issues, intangible cultural issues, monuments, and cultural properties.

From such a standpoint, Cheju's current cultural heritage policy was investigated by observing cases, and developmental plans will be presented. Broad topics pertaining to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spatial concept that encompasses points, lines, and planes from a distinctive view, as well as the expansion of cultural assets to broader cultural heritage, were presented.

In categorizing Buddhist cultural heritage, tangible heritage includes statues of Buddha; these have a direct correlation with intangible heritage as observed in ceremonies. The current status in Cheju regarding cultural heritage policies and how those policies have dealt with Buddhist cultural heritage over the past millennia were investigated through Internet sites and publications.

*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Bureau of Education, Dongguk Uni.

The online data on religion, seasonal customs, and other cases pertaining to Buddhism is insufficient in “The Multimedia Cheju Cultural Tourism Dictionary” (www.jejorogo.kr), which was last updated on February 1, 2008. Based on the “Cheju Dialect Study” of 1962, the “Cheju Language Directory” comprising 25,350 sectors (revised and supplemented in 1995 and 2009), and the “Cheju Cultural Directory” compiled in 2012, certain data were omitted from the list of investigation sectors, and thus certain information is missing. In 2008, there were 99 cultural symbols in Cheju, although Buddhist cultural heritage symbols accounted for only 12.2% of that total (tangible heritage: 41%). Of the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only 0.03%, or three, were included.

The developmental plan is as follows. First, published information regarding the Island of Cheju must be revised and supplemented to reflect the last 1,000 years of Buddhist history and customs. Second, a Buddhist cultural festival containing museums and involving the entire area of Cheju needs to be hosted. Third, the Boksin Maitreya needs to be declared a Landmark. Fourth, a “mind industry” should be developed as a healing business based on Chamseon or meditation. Fifth, a World Mind Center should be developed along with a Buddhist Cultural Complex.

Key Word : Cheju, Cultural Heritage Policy, intangible heritage, mind industry, meditation, Buddhist Culture.

교신 : **고상현** 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동국대학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E-mail: avalo09@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5. 08. 31.
심사완료일 2015. 10. 12.
게재확정일 2015. 10. 17.